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년 9월 8일 조간 (9. 7.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기후경제과	전원혁 과장 / 조하연 사무관 044-201-6580 / 6593
	배포일시	2021. 9. 6. / 총 7매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안정화 위해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참여 추진

- ◇ 증권사 등 제3자(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정보통신망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9월 8일 행정예고
- ◇ 제3자 참여에 따른 거래 활성화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중개회사*(이하 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9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자로, 시장조성자와 달리 별도의 의무 없이 배출권 매매 가능

○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및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중에 제3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 이번 고시 제정으로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여 거래가 활성화되면 배출권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간의 배출권 수급불균형, 가격 급등락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할당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특성 때문에 거래가 배출권 정산기(매년 6월 말)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었고, 매도·매수 쏠림현상이 발생되어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해왔다.

* ('15년) 566만톤 → ('16년) 1,197만톤 → ('17년) 2,626만톤 → ('18년) 4,751만톤 → ('19년) 3,808만톤 → ('20년) 4,401만톤

-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 개정 및 회원 가입 절차 등을 마련하며, 자격을 갖춘 제3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하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자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되며, 과도한 시장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등에 따라 1개사당 배출권 보유한도는 20만톤으로 제한된다.

* 자기의 명의,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방식(타인의 위탁을 받아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위탁매매와 구분)

- 환경부는 제3자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향후 제3자의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출권 시장조성자* 제도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고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며, 산업은행·기업은행(2019년 6월 이후) 및 하나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SK증권(2021년 5월 이후)이 참여 중임

- 붙임 1. 배출권 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 안.
 2. 국내외 배출권 거래시장 동향.
 3. 배출권거래제 개요 및 운영 일정.
 4.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기후경제과 조하연 사무관(☎ 044-201-65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설비”라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비기준) 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거래계정을 등록하려는 자는 원활한 배출권 거래 등을 위한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체)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중개 업무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협의, 정책 건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로 하여금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비기준****1. 다음의 설비****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 (1) 할당대상업체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문을 직접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및 해당 주문을 중개할 수 있는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2) 배출권 거래소와의 시스템 연결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의 증권시장에 배정된 통신 회선 및 세션이 구축되어 있을 것
- (3)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등 업무 관련 전산설비의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어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 (4)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5)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1) 이해상충부서 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추 것
-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의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추 것
-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 (1) 정전·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 (2)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그밖에 배출권 거래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적·인적 설비

□ 국내 배출권시장 가격 동향



- (가격상승) '20년 初까지 배출권 가격은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로, 연말과 배출권 제출일(6.30일) 직전에 상승폭 확대
 - (가격하락) 코로나19 등에 따른 '20년도 배출량 감소로 배출권 가격이 '20년末 3만원/톤에서 지속 하락
- ⇒ 6.30일 배출권 정산 및 8.9일 이의신청 업체 정산 완료 후 일부 업체들의 배출권 매수로 9.6일 현재 배출권 가격은 28,000원/톤

□ EU 배출권시장 가격 동향

- (거래 가격) 제4차 계획기간('21~'30) 출범과 맞물린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에 따라 최고가 갱신 중(9.3일, 61.7유로)
 - (시장 구조) 할당대상업체보다 금융기관, 개인 등 제3자의 참여 규모가 월등히 크며, 현물시장보다 선물시장의 규모가 큼
- ⇒ 제3자의 거래 참여와 선물시장 도입 등으로 EU 배출권 가격은 석탄·가스가격, 이상기후 현상 등 외부요인에 연동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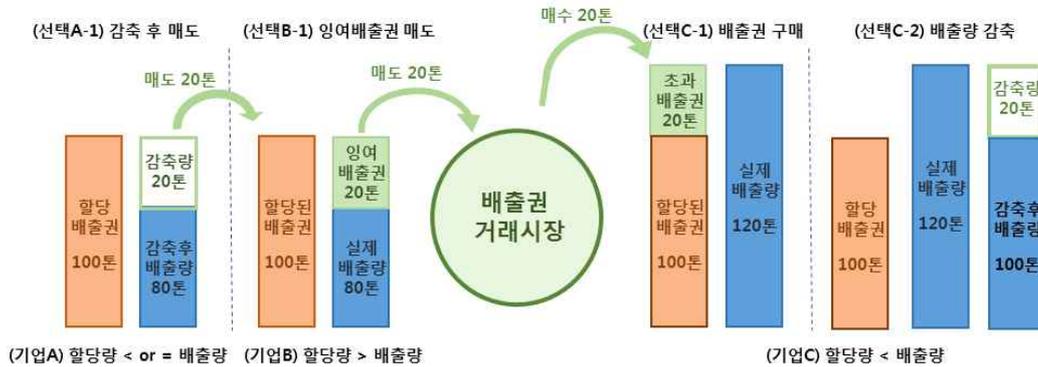
붙임 3

배출권거래제 개요 및 운영 일정

□ 배출권거래제 개요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
-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비용효과적 감축 방법

⇒ '15년 도입, 1차('15~'17)·2차('18~'20) 계획기간 운영, 제3차 계획기간 ('21~'25) 이행 개시



□ 배출권거래제 운영일정

-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의 배출량을 다음해 3월 말까지 제출하고 정산일(6월 말)까지 해당이행연도의 배출권 거래 가능

※ 2020 배출인증량 확정('21.5.28.), KAU20 배출권 거래(~'21.6.30/'21.8.7)



1. 시장조성자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어떻게 다른지?

- 시장조성자는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별도 절차에 따라 지정됩니다. 또한, 매일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으며 의무 이행 실적을 매월 평가받습니다.
- 반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환경부와의 계약이나 별도의 지정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소 회원가입 절차 등을 거친 후에는 배출권거래소 내에서 일반 할당대상업체와 같이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2. 증권사의 참여에 따른 예상 기대효과?

- 배출권 거래 정산기(6~7월)에는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과부족량이 정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나, 부족량과 잉여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권 제출 직전에 가격이 급격히 변동합니다. 이번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참여로 수급불균형이 해소되면,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배출권 거래 비정산기에는 거래량이 적어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권 판매와 구매가 어려웠으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참여로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면 할당대상업체들이 상시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